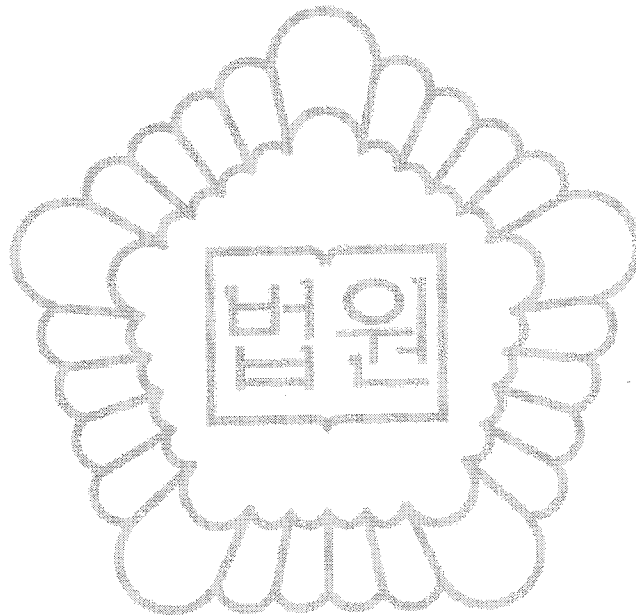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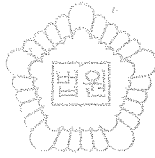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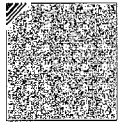
2010누25727

판 결 서



서울고등법원

웹수주
No. _____
2011. 02. 23
법무법인 살라



서울고등법원

제 2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0누2572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신태호, 송난근, 이영기, 오민석

피고, 항소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규

제 1 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22. 선고 2010구합18178 판결

변 론 종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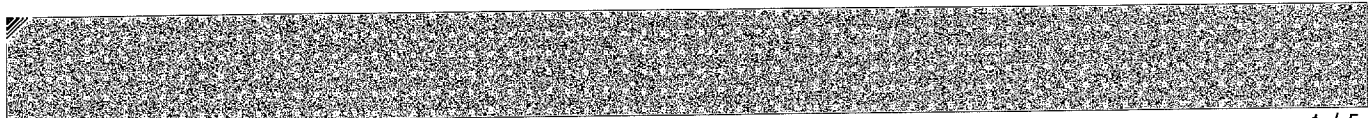
2010. 1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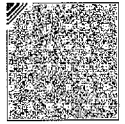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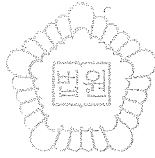
판 결 선 고

2011. 2.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정보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고치고 아래 다.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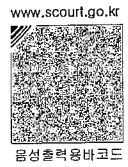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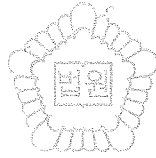
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 제6쪽 제1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각 고친다.

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명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에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그 아래 부분에 '☞ 감사, 감독,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내용인 점,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2호증) 등을 고려하면, 위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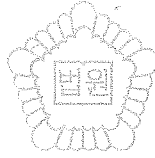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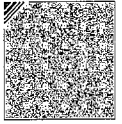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운 _____

 판사 이정민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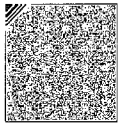
 판사 권덕진 _____



정보목록

아래 공사의 추정금액(또는 추정가격) 산출근거(기준 포함)

- 한강살리기 3공구(여주 1지구) 사업
- 한강살리기 4공구(여주 2지구) 사업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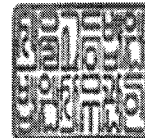


정보입니다.

2011. 2. 15.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박민식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보를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